



행정안전부



첫 시행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



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
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에 **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** 를 부착해 드립니다.

인증신청

- 신청대상: 건축주, 건축물 소유자, 사업주체·시공자
- 구비서류: 설계인증* - 인증신청서, 성능평가보고서
시공인증** - 인증신청서, 성능평가보고서, 구조감리보고서

* 성능평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내진설계기준의 만족여부 확인
** 구조감리보고서 검토를 통해 완공 도면 대로 시공되어있는지 확인

· 제 출 처 : 인증기관(한국시설안전공단)

비용지원

민간분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시 **내진성능평가 비용의 60%, 인증수수료의 30%**를 국비로 지원

※ 금년 국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22.5억원으로 건물 500동 규모 지원 예정

문의: 055-771-4888(한국시설안전공단) / E-mail: seismiccerti@kistec.or.kr

인증절차



1 평가의뢰
내진성능평가 기관에
자체평가서 작성 의뢰



2 인증 신청
인증기관에 설계 인증
또는 시공 인증 신청



3 인증서 발급
인증서 및
인증 명판 교부



내 집, 내 직장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


지진안전 시설물을 한 눈에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.



지진에도 안전한 건물로서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.

※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여부는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 추진 예정

인증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?



내 집, 내 직장을 지진으로부터
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.



지진안전 시설물을 한 눈에 확인해
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.



지진에도 안전한 건물로서
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요.

※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 및 부동산
중개대상물 확인서에 표기 중이며 인증여부도 표기 추진 중



첫 시행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

지진안전 시설,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.
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은 인증마크를 통해 정부에서 인증을 해드립니다.


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란?

배경

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건축물의 내진율은 10.05%에 불과('17년 12월 기준)

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안전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'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' 도입*

* 지진대책법 개정('17.10.24.), 시행령 개정('18.12.4.), 시행규칙 마련('19.2.14.)

인증 제도

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*에 **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마크를 부착**

* 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어린이집, 요양병원, 연립주택, 숙박시설 등

인증 신청

· 신청대상: 건축주, 건축물 소유자, 사업주체·시공자

· 구비서류: 설계인증* - 인증신청서, 성능평가보고서
시공인증** - 인증신청서, 성능평가보고서, 구조감리보고서

* 성능평가보고서 검토를 통해 내진설계기준의 만족여부 확인

** 구조감리보고서 검토를 통해 완공 도면 대로 시공되어있는지 확인

· 제출처: 인증기관(한국시설안전공단)

인증 절차



정부에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?

비용 지원

민간분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인증 시 **내진 성능평가 비용의 60%, 인증수수료의 30%**를 국비로 지원

· **내진성능평가**: 60% 지원, 민간자부담

· **인증수수료**: 30% 지원, 민간자부담

※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 상이 (문의: 지자체 지진·재난 관리부서)

※ 금년 국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된 국비 22.5억원으로 건물 500동 규모 지원 예정

항 목	수수료 비용
설계인증	480만원
설계인증 + 시공인증(일반공법 시공)	600만원
설계인증 + 시공인증(특수공법 시공)	660만원

※ 연면적에 따라 비용차이 발생 가능
(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(문의) 055-771-4888)

인증 명판



인증 기준

내진설계의 주요 확인사항

1. 지진위험도 산정 적정성
2. 해석모델의 적절성
3. 성능수준 판정 적정성

내진설계·시공의 주요 확인사항

1. 사용재료의 적정성
2. 기초 시공의 적정성
3. 콘크리트, 철근 등 시공 적정성

※ 건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동판으로 제작해 드립니다.

내진보강시 혜택은?

1 민간건축물 세제 감면(행정안전부, 기획재정부)

구분	지방세 감면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」	국세 공제 「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」
대상	내진설계 非 의무대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확인 받은 건축물	
감면 기간	'13.8.6.~'21.12.31.	'17.1.1.~'21.12.31.
내용	·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: 취득세 50%(1회), 재산세 50%(5년) 감면 · 대수선: 취득세 100%(1회), 재산세 100%(5년) 감면	기업 규모에 따라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 차등* 공제 * 대기업 1%, 중견 5%, 중소기업 10%

2 지진보험료 할인(각 보험사, 보험개발원)

대상: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

* (조건)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특약가입, 풍수해보험 가입

기존건축물	신축건축물
내진보강 시 보험료 20% 할인	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 내진설계 시 30% 할인

3 건폐율·용적률 완화(국토교통부)

내진보강 목적 증축, 개축, 대수선하는 건축물 내진보강 시, 건축위원회심의 신청을 통해 건폐율·용적률 최대 10% 완화

4 내진성능 확보 표기 시행(국토교통부)

건축물대장: 내진설계적용여부, 내진능력('17.6월~)

부동산중개 확인서: 내진설계적용여부, 내진능력('17.7월~)

※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여부도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대상을 확인서에 표기 추진 중